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85
----------	-------

발의연월일 : 2022. 3. 28.

발 의 자 : 이종배 · 구자근 · 김선교
김성원 · 박완수 · 성일종
정우택 · 조명희 · 조수진
추경호 · 태영호 · 홍석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의 조건에 관하여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차입공매도하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4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차입공매도한 자는 90일 이내에 차입한 상장증권을 상환하여야 하고 담보비율을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차입금액 및 담보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입공매도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차입공매도하려는 자와 차입공매도한 자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생략)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차입공매도하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4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u>
<u><신 설></u>	<u>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차입공매도한 자는 90일 이내에 차입한 상장증권을 상환하여야 하고 담보비율을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u>
<u>② · ③ (생 략)</u>	<u>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u><신 설></u>	<u>⑥ 제2항에 따른 차입금액 및 담보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u>

시한다.